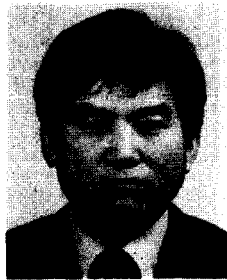


머릿말

先進諸國의 酒類産業現況

酒類는 主食 다음가는 중요한 기호음료로서 경제형편에 관계없이 세계 전역에 고래로부터 이용되고 있다. 초기에는 원료사정에 따라서 전통적으로 고유 민속주들을 개발하여 이용하고 있는바 영국의 위스키, 프랑스의 포도주, 독일의 맥주, 일본의 청주등이 그 예이다. 나라마다 엄격한 면허제도나 주세정책으로 自國의 민속주를 보호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료의 가격과 수급사정, 경제수준에 따른 식생활 양상의 변천등으로 주류산업도 변천되어 가고 있다.

그동안의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식생활의 변화와 빈번한 국제교류, 수입개방 정책등으로 지금도 많은 변화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류산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보다 앞서가는 선진제국의 주류산업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 주류산업 변천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曹 戡 銑

〈慶熙大 教授·農博〉

일본의 주류산업

고래로부터 일본은 청주를 이용해 왔으나 근래 경제성장과 식생활의 洋風化로 맥주, 위스키, 포도주등의 이용이 증가하고 최근에는 아직도 적기는 하지만 소주의 이용이 급신장하고 있어 청주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1973년부터 1983년까지 10년간 각종주류 소비현황을 살펴보면 표1과 같고 주류 소비 금액을 종류별 구성비로 나타내면 표2와 같다.

먼저 청주는 오래동안 가장 주종을 이루어 왔지만 1975년도를 전성기로 하여 감소추세에 있다. 이것은 戰后 생활양식의 현저한 변화와 식생활이 다양화 되고 청주자체의 Product life cycle이 성숙후기 단계에 들어간 때문이다. 또한 원료가 되는 쌀값이 맥주원료인 맥아나 Hop의

■ 目 次 ■

- 머릿말
- 일본의 주류산업
- 미국의 주류산업
- 영국의 주류산업
- 서독의 주류산업
- 프랑스의 주류산업
- 각국의 주류산업정책
- 맺는 말

표 1. 일본의 주류소비 동향

(단위: 100ml, 연간 1가구당)

연도	주류	청주	소주	맥주	위스키	포도주
1973		217.47	20.10	60.64	21.18	4.63
74		228.43	23.99	61.69	22.33	4.24
75		226.00	22.77	65.56	25.93	5.40
76		204.69	21.06	59.92	24.61	5.03
77		212.37	24.09	68.02	30.18	5.55
78		201.07	25.19	75.12	28.11	5.69
79		190.01	26.41	76.04	31.59	5.83
80		183.12	26.33	73.87	31.93	5.49
81		179.45	26.14	72.53	33.04	5.54
82		173.28	28.67	74.05	34.57	7.12
83		158.44	34.45	74.32	31.68	7.84
83/73		72.9	171.4	122.6	149.6	169.3

표 2. 주류소비 금액의 종류별 구성비

(%)

연도	주류	청주	소주	맥주	양주	과실주	기타
1965		45.4	4.7	40.2	7.4	1.7	0.6
1970		42.7	2.9	40.2	12.4	1.1	0.7
1975		38.4	2.5	36.8	19.7	1.7	0.9
1980		28.7	2.7	41.2	24.6	1.9	0.9
1984		23.2	5.9	45.2	22.4	2.4	1.0

값에 비해서 경쟁이 불리한 것도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소주는 저소득층에 이용 되었고 전후 경제형편이 좋지 못한 때에는 실업용 알콜을 희석하여 이용하기도 하였지만 증류기술이 발달하여 값싸게 대량생산하므로써 1981~1985년 사이에 251,000KL에서 629,000KL로 연평균 20%의 높은 성장율을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이 희석식이고 알콜함량이 20, 25, 35도이며 포장단위는 1.8l, 600ml, 360ml, 200ml등으로 되어 있다. 20도와 25도의 소주는 직접 마시지만 최근 위스키처럼 물을 타서 마시고 35도 소주는 매실주등으로, 일부는 저림류 식염감량시 방부제로 이용한다. 생산도 그렇지만 판매도 도매,

소매업 모두 허가제이다.

위스키의 생산은 세계 5위이지만 소비는 미국 다음이고 영국보다도 4배나 많이 하고 있다. 외래주인 때문에 자금이나 기술의 제약을 받고 있다. 현재 4개 회사가 전체 생산량의 99.5%를 차지하고 있다. 1923년에 처음으로 국내생산된 위스키는 원료인 맥아, 옥수수등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독자적인 기호를 가진 제품으로 일본에 정착시켜가고 있다. 위스키의 소비량은 전체 주류의 10%를 차지하고 금액으로는 22%를 차지하고 지난 10년간에 50%신장을 하고 있다.

1870년에 생산하기 시작한 맥주는 전후 급격히 성장하였다. 1950년대 후반 고도 경제성장으로 생활양식이 양풍화되어 여성의 음주인구도 증

가하여 맥주소비는 계속 신장하였다.

그 중에서도 생맥주의 신장율이 높았는데 이것은 여과기술이 발달하여 살균없이도 보존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 때문이다. 포장 형태는 캔맥주 형태가 주종을 이루고 1회용 병포장도 많으며 전통적인 633ml 병은 감소되어 가고 있다.

맥주소비가 늘어난 것은 가정용으로 소비가 늘어난 것도 그 이유이다. 즉 1950년대 소비량의 70%가 술집에서 판매되던 것이 1978년에는 반대로 가정용이 70%나 된다.

맥주산업은 거액의 설비투자가 요구되어 독과점화 되어가고 있다. 또한 맥주는 高額의 주세를 부담하므로 마진이 적고 거액의 투자비를 회수하기 곤란하므로 신규참여가 어렵다.

맥주는 중요한 稅源이 되어 소매가격의 47.8%가 세금이다. 이렇게 많은 재원이 되므로 정부에서는 제조와 판매의 양면에 엄격한 면허제도를 택하고 있다.

맥주의 유통은 특약점, 소매점등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전체의 90%이지만 최근에는 2단계의 도매점을 거치는 양이 증가되고 있다. 전국의 소매점 수는 대량 155,000, 도매점 16,000, 특약점은 1,900개소이다. 맥주는 서구나라들의 전통주이지만 알콜도수가 낮고 해갈에 좋아서 건강면에서도 앞으로 계속 신장 될 것이다.

포도주는 1970년대 후 포도주붐이 일어 위스키 다음의 양주가 되었다. 최근 10년간 포도주 소비량은 70%나 신장하였고 호텔식당등을 주체로하여 소비되던 것이 소매점에서 일반가정에 침투하기 시작하였다. 포도주 양조는 원료 포도에 의해서 제약을 받으며 따라서 수입에 의해서 부족되는 양을 충당하고 있다.

1980년 포도주 양조 면허접수는 諸成量 10kl 이하가 92개소 10~100kl규모가 61개소, 100kl이상이 47개소이며 전체 생산량의 70%를 3개 회

사가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전업 또는 겸업으로 포도주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는 150개에로 추정되지만 출하량의 95%는 10개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주류산업

1983년 미국의 주류소비량은 증류주 1,632,000kl, 맥주 28,297,000kl, 포도주 1,994,000kl로서 과거 4년간에 증류주는 5.4% 감소하고 맥주나 포도주는 각각 5.8% 및 18.6%가 증가 되었다.

증류주 중에서도 위스키가 전체의 46.2%, 보드카가 19.4%이다. 수출입상황은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입량이 수출량보다 훨씬 많고 특히 위스키는 전체 소비량의 40% 정도, 포도주는 20%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표 3. 미국의 주류 수출입 현황(1983)

(단위 : 1000겔런)

구분 주류	수 출	수 입
증 류 주	4,322	58,175
맥 주*	7,929	86,987
포 도 주	7,609	131,006

*상자

미국의 증류주 제조공장은 137개이고 그중 캘리포니아주와 켄터키주에 약50%가 집중되어 있으며 1,084개의 포도주 保稅공장도 55%가 캘리포니아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맥주공장은 각 주별로 분산되어 있다.

주류의 판매는 독립된 업자가 州정부의 면허를 받아서 주류를 취급하는 라이선스州와 도매단계 또는 도매와 소매단계를 취급하는 주정부가 행하는 州가 있다. 도매업자에는 리큐르(포도주, 증류주)를 취급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자와 맥주를 취급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자로 구분된다. 최근에는 리큐르 도매업자가 증가하는 경향이다.

소매업자는 음료용에 한해서 판매할 수 있는 점포와 사서 가져가는 술을 판매할 수 있는 점포, 그리고 둘다 판매할 수 있는 점포가 있다. 또 마실수 있는 점포만의 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주

과세방식), 종량세 방식, 종가세 방식등이 있는 그밖에 증류주의 TV광고는 모두 금지되고 맥주와 포도주의 TV광고를 허용하는 州도 있다. 또 음주 연령과 판매시간에 대해서도 주마다 달리

표 4. 주세의 과세방식

구분 주류	연방세		州稅		지방세	
	관세	소비세	소비세	매상세	소비세	매상세
증류주	1*	1	2	3	2	3
맥주	2	2	2	3	2	3
포도주	2	2	2	3	2	3

* : 지방세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시

1 : proof-gallon방식 2 : 종량세 방식 3 : 종가세 방식

표 5. 미국의 각종 주류에 대한 세율

구분 종류	關稅	연방소비세	州소비세 (NY, Cal)	州매상세 (NY, Cal)	기타
위스키	0.39\$/9proof·gallon (알콜 44% ℓ 당 89\$)	10.5\$/proof·gallon (알콜 43% ℓ 당 239\$)	48proof이하 0.80\$/Gal.	4%	뉴욕시소비세(증류수1.00\$/Gal) 매상세 4% 市 1% 郡 1.25%
			" 이상 3.25 "		
맥주	0.06\$/Gal.	9.00\$/ barrel 7.7 ¢ / ℓ	100proof이하 2.00 "	4.5%	市 1%, 郡 1½%
			" 이상 4.00 "		
포도주	알콜 14% 이하	알콜14%이하 0.17\$/Gal.	알콜14%이하 0.01\$/Gal.	4.5%	뉴욕시 매상세 4% 市 1%, 郡 1.25%
	1 Gal.용기이하 0.376\$/Gal.	" 14~16% 0.67 "	" 14~21% 0.02 "		
	" 이상 0.625 "	" 21~24% 22.5 "	" 21~24 0.02 "		
	알콜 14% 이상 0.315 "				

(일리노이주, 미주리주등 4개 州)도 있다.

미국의 주류에 관한 제도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의한 규제가 별도로 있고 연방정부의 규제에 준하여 주정부의 규제가 적용된다.

면허제도를 보면 소매 면허는 술판매 면허와 음료판매 면허가 있고 약국이나 식료품점의 술 판매 자격은 각 주마다 다르다. 주류에 대한 세금은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류 고유의 소비세와 다른 상품에도 과세되는 판매세 및 관세가 있으며 과세 방식은 Proof-gallon방식(알콜함량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주류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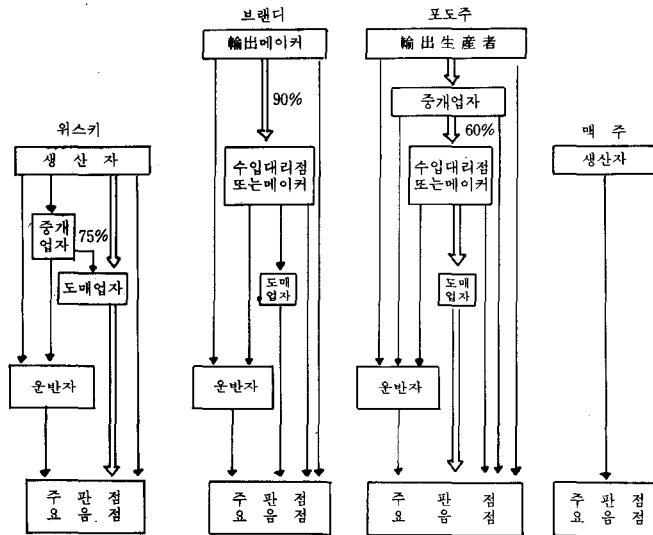
1983년 주류의 소비량은 맥주 5,612,000kl, 증류주218kl(40%주정환산), 포도주 444,000kl로서 맥주소비가 가장 많지만 근래에 맥주와 증류주는 감소하는 경향이고 포도주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수입주류와 국내생산 주류의 경합관계는 거의 없고 민속주 이외의 것이 수

입되고 있다.

영국에서 주류의 유통기구는 조직화와 統合化가 진행되고 그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 6대 맥주회사(Allied, Bass, Courage, Scottish & New Catsle, Watney -Jruman, White bread)이다. 이들의 산하에서 판매점에서 50%의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

도매는 전통적인 법, 지원가맹 체인 및 공동사업 기구, 체인스토아의 3형태로 구분된다. 전통주의 도매업자는 1,000상 정도이지만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수는 6대 맥주제주회사 계열하에 들어 있다.

한편 소매는 음주점과 주류판매점으로 나눌 수 있고 전체 매상의 약75%를 음주점이 차지한다.



(注) → 주요 경로

그림 1. 영국의 주류 유통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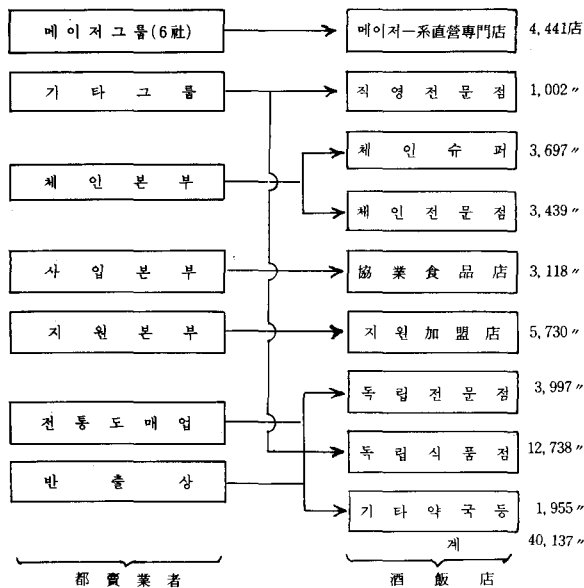


그림 2. 도매업자와 주판점의 취급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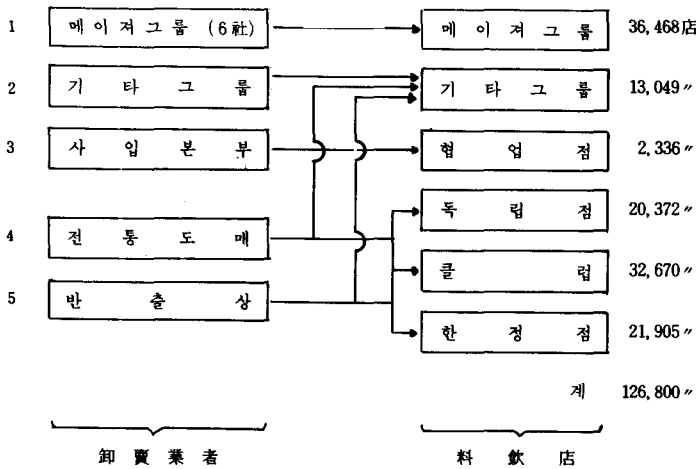


그림 3. 도매업자와 요음점의 취급형태

영국에서도 주류의 제조 및 판매의 면허가 필요하지만 소규모 자가 소비용 맥주 양조에 대해서는 1963년 이후 면허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도매 면허는 稅收 확보 수단으로 생각하고 관세, 소비세 취급 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소매 면허는 적정 배치, 준법정신의 유무등 사회적 견지에서 지방판사가 허가하고 있다. 소매 면허는 완전면허(모든 주류의 상점 내외에 소비용 판매가능) 한정면허(상점내에서만 판매), 클럽면허(상점내 소비용으로 판매가 인정된 것으로 등록된 클럽에 대해서 부여함), 음주점면허(상점밖의 소비용으로 판매하는 것) 등으로 대별된다.

주류에 대한 세율은 전부 종량세이고 맥주의 세금은 造稅 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그밖에 소매가격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과 동시에 EC이외의 나라에서 수입되는 것은 관세가 부과된다.

광고활동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신문, 인쇄물 및 방송매체에 관해서 자율규제가 되어 증류주의 TV, 라디오 광고가 금지되고 있다.

서독의 주류산업

1982년 서독의 주류소비량은 증류주 195,000kl, 맥주 9,110,000kl, 포도주 2,142,000kl이다. 맥주 소비량의 40%는 집 밖에서 소비되지만 증류주는 80%가 가정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류의 수출입 상황은 맥주는 수출하고 증류주와 포도주는 수입하고 있다. 주류시장을 점유하는 수입주류의 비율은 증류주가 약 25%, 포도주는 작황에 따라 40~60%로 추정된다.

주류의 유통은 유통단계의 協業化와 공동화가 추진되고 있고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매상고의 60~70%는 15~16개의 주요 취급先(協業體본부, 체인본부등)이 차지하고 있으며 유통경로는 그림 4와 5에서 보는 것처럼 증류주는 조직화된 소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포도주는 생산자 직매 비율이 높다.

면허제도는 도매와 소매의 구분이 없고 지방 자치 단체가 전체주류 면허와 한정면허(맥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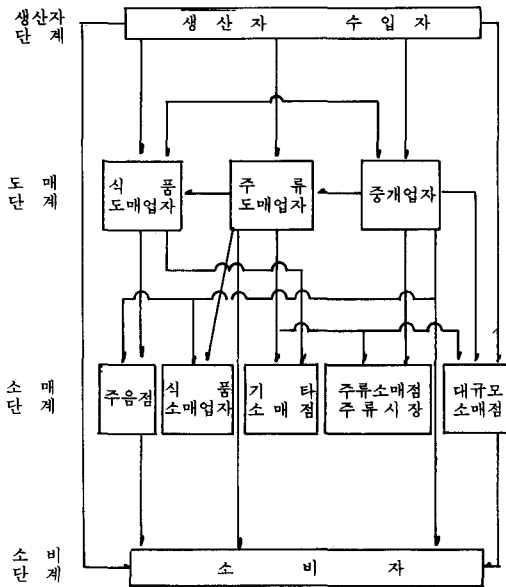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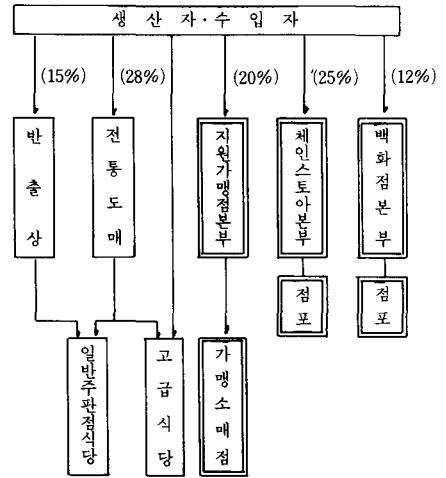
그림 4. 주류의 유통경로

포도주 취급에 한정)의 구분에 따라서 허가하고 있다. 또 면허에는 상점안이나 밖의 소비 구분이 없이 양쪽 다 판매할 수 있다.

EC이외의 나라에서 1회에 3kl이상의 포도주 또는 리큐르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연방정부의 면허가 필요하다.

증류주의 제조판매는 제조업자의 경영안정, 증류주 판매안정, 감자생산농가를 보호하는 등의 관점에서 연방증류주 전매관리국이 관장하고, 감자, 옥수수, 당밀로부터 제조되는 증류주는 전량 전매관리국이 구매하여 판매하는 직접관리 방식을 채택하고 그밖의 원료로부터 제조되는 증류주에 대해서는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지만 제조에 관해서 세무담당관의 통제를 받는 간접 관리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주세는 전부 從量과세 방식이지만 포도주는 1926년 이래 과세하지 않고 맥주는 규모별 과세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또 부가가치세는 모든 주류에 과세하고 수입관계가 EC지역 이에서 수입되는 것에 부과하고 있다.



(注) 1. () 유통비율
2. □ 조직화된 형태

그림 5. 서독의 증류주 유통경로

주류의 광고에 관한 법적 규제가 없고 1976년에 주류 광고에 관한 자율규제제도가 수립되어 건강, 청소년 및 교통안전 대책에서 과도의 음주등을 촉진 또는 유인하는 광고는 스스로 금하고 있다.

프랑스의 주류산업

1981년의 프랑스 주류 소비량은 포도주 4,987,000kl, 맥주 2,430,000kl, 증류주 289,000kl (40% 주정환산)으로 포도주 소비가 가장 많다. 전체적으로 소비량이 정체 또는 감소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프랑스는 주류 수출국이지만 소비량의 15% 달하는 포도주를 이탈리아에서 수입하는 이외에도 위스키, 진동의 수입량이 증가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유통의 대형화가 비교적 느리다. 주류 도매업자수는 약 25,000명으로 추정되지만 대부분이 제조업(특히 포도주)을 겸하고 있어 전문 도매업자는 250명 정도로 추정된다.

주류 판매점의 종류는 단독상점(전통식품점과 전문점)이 75,000개소, 슈퍼마켓 11,500개소, 하이퍼마켓 500개소 정도이다. 유통경로는 술의 종류에 따라 달라서 포도주의 경우 그림 6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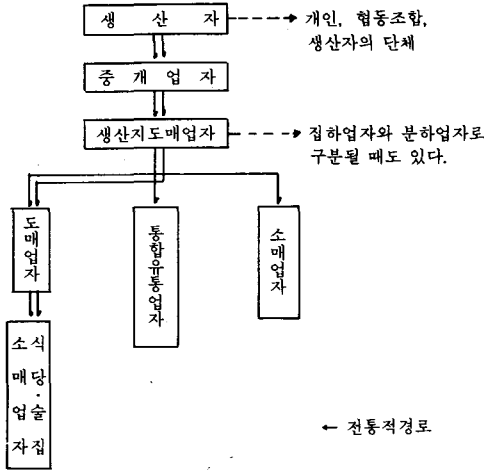


그림 6. 포도주의 유통경로

보는 바와 같이 전통적 경로가 포도주 판매의 50%를 차지하고 증류주는 하이퍼와 슈퍼마켓에서 60~70%를 취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프랑스에는 주류제조 및 판매에 대한 면허제도가 없이 식품과 음료 판매점 및 알콜중독 대책법에 의해 일부 신고제도가 있다. 소매점의 면허는 음료점의 면허에 1종면허(술 이외의 음료), 2종면허(발효음료, 알콜분1~3%인 포도주, 맥주, 사과주등), 3종면허(2종면허의 품목 이외에 알콜 18%이하의 천연포도주와 리큐르등), 제 4종면허(전종류의 주류)로 구분된다.

이들 면허를 갖지 않은 식당등은 식당 小免許(알콜분1~3%의 포도주, 맥주, 사과주등)와 식당면허(전종류의 주류)가 있다.

음료 판매점 면허는 종류에 따라 주류를 판매할 수 있지만 그밖의 사람들이 집에 가지고 갈 목적으로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별도의 면허가

있어야 한다. 이 제도는 자동판매기에서 주류를 소비자에게 직접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종량제 방식에 의한 주세와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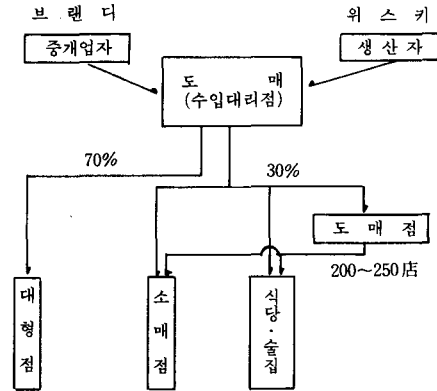


그림 7. 증류주의 유통경로

가가치세 및 관세가 부과된다.

지방의 영세 증류업자는 「Bouilleuro de Crue」로 알려져 있는데 세금 없이 1년에 순수알콜 10l까지 만들 수 있다. 1960년 이후 이 특권의 양도가 불가능 해져서 영세 증류업자는 감소하고 있다.

주류광고에 대해서는 법률상 규제되지 않고 일부주류는 제품상, 판매대리인의 명칭, 주소등을 광고에 사용할 수 있고 일부 술은 광고가 금지되어 있다.

각국의 주류산업 정책

주류 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과세면을 제외하면 의외로 적고 광고 규제, 음주연령제한, 음주운전규제 등, 소비자보호, 사회물가 억제라는 목적에서 규제되고 있다.

다만 주류중에서도 농업과의 역할이 큰 주류 산업에 대해서는 예를들면 서독의 증류주정책, EC각국의 포도주 산업정책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농업정책적 입장에서 주류산업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주류산업에 관여하고 있지만 연방정부에서는 재원으로서의 租稅정책 및 그에 관련되는 정책으로 보이지만 산업진흥에는 소홀하고 주류업체나 各州 정부에서 진흥책을 펴나가고 있다.

주정부의 진흥책의 대표적인 예는 캘리포니아주의 포도주 산업진흥책으로 세울경감 면허 완화등 · 포도주 소비 촉진책을 들수 있다.

영국은 맥주가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지만 민속주로서는 위스키가 이용된다. 그러나 산업정책적으로는 다른 나라와 다를바 없고 거의 업계가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다.

독일은 증류주에 대해서 전술한 바와 같이 전매관리국에 의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관리하에 놓여 있지만 이것은 감자를 원료로 하는 증류주의

생산성이 낮아서 시장경쟁에 위임하는 경우 영세한 감자생산자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므로 관리를 한다.

EC국가들은 무역촉진 정책에 의해 포도주는 가격경쟁 상태에 있고 EC로서는 수요가 정체되는 가운데 가격경쟁이 계속되면 포도재배 농가에 영향이 클것으로 판단하여 과잉의 포도주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매하여 증류주로 하여 저장은 정책을 펴고 있다.

맺 는 말

이상 단편적으로 선진각국의 주류산업 현황을 살펴 보았는바 우리나라의 경우도 값싼 소주의 이용, 알콜함량이 낮은 맥주의 이용, 그밖의 과실주의 이용등 전반적으로 증가 되겠지만 특히 생활의 다양화로 외래주의 신장율이 당분간 증가될 것이지만 이들은 정부의 주류산업정책 여하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대화속에 숨은홍계 간첩집아 막아내지